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합574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 고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변론 종결 2020. 10. 28.

판결 선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대여금채권에 관한 2017. 6. 2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0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별지2 가액배상 내역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S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1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채권 중 위 2.항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S는 다수와 투자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회사 및 투자상품 등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S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S에게, 원고 A은 480,000,000원, 원고 C는 327,000,000원, 원고 B는 30,000,000원을 각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2017. 8. 25. S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8. 4.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192호).

다. 피고들은 S에 대하여 총 830,000,000원 정도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S는 2016. 9.경 T에 8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T의 대표이사인 U와 V, W이 T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S는 2017. 6. 23.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6. T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7. 6. 27. T에게 도달하였다.

라. S는 2016년 매출액이 없고,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29,611,000원이며, 2016년 5,506,845,081원, 자산총계는 부채총계는 자본총계가 7,473,895,365원으로 -1,967,050,284원이고, 당기순손실액은 369,457,838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의 S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양수한 채권을 S에게 양도하고 T에게 그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양도받은 채권의 준공유자로서 공동하여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변제받은 총액 16,007,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채권의 준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별지2 가액배상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자 수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S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지를 본다.

1) 피고들은 채무자 S에 대하여 8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는 2017. 6.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피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던 중 2017. 6. 23. 피고들에게 투자금 830,000,000원을반환하는 대신 S의 T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들의 투자금 금액은 830,000,000원으로 양수받은 채권의 명목상 금액인 800,000,000원보다도 높고 실질적인 채권가치는 명목상 금액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S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는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이 S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S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채권양도 당시 S의 현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인 S가 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위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S는 피고들에게 현금사정이

좋지 않아 S가 투자한 채권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초과라는 사정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T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투자금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6,007,500원만 회수하였을 뿐이고 T도 부도가 나서 앞으로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S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 E, F, H, I, J, K, L, M, N, O, P, R, Q가 원고들의 소송에 다툼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청구를 인낙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T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T이 부도가 나서 채권을 회수한바 없으니 T에 대한 채권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가사 청구인낙 의사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은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판결), 피고 D, E, F, H, I, J, K, L, M, N, O, P, R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Q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구술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S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배은실, 판사 신예슬

별지1

목 록

S가 2016. 9.경 T에게 대여한 800,000,000원 대여금 채권(원금 800,000,000원, 이율 연 24%). 끝.

별지2

가액배상 내역표

순번	피고	청구금액(단위: 원)
1	D	1,295,860
2	E	2,262,420
3	F	1,547,220
4	G	193,780
5	H	193,780
6	I	97,140
7	J	5,007,700
8	K	599,860
9	L	1,643,860
10	M	967,220
11	N	619,220
12	O	425,780
13	P	251,860
14	Q	708,020
15	R	193,780